



청 구 취 지

별지 3 '청구금액 내역' 중 '피고'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은 '원고'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청 구 원 인

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3 '청구금액 내역' 중 '대출금액'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관한 각 대출약정(이하 '이 사건 각 대출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,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(또는 설정자)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, 피고들이 미리 준비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대출거래약정서 I(가계용), 대출거래약정서 II(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), 여신거래약정서 I(기업용), 여신거래약정서 II(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), 근저당권설정계약서,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(이하 '이 사건 표준약관'이라 한다)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. 한편, 이 사건 표준약관은 인지세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,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약정서) 및 근저당권설정비용(근저당권설정계약서, 저당권설정계약서)(이하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통틀어 '대출 관련 부대비용'이라 한다)의 부담을 은행과 고객이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(이하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선택방식에 관한 조항을 '이 사건 부담조항'이라 한다).

그런데 이 사건 부담조항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,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

에 따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대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므로, 사실상 비용의 부담주체가 고객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약관에 해당하고, 이는 금융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의 "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"으로 무효이다.

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부담조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대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, 그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014. 8. 11.

재판장 판사 배 광 국



판사 김 유 진



판사 최 한 순

